

○ 주파수, 전파의 형식,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전력

주파수(MHz)	전파의 형식	점유주파수 대역폭	안테나 공급전력
161.975(TRX), 162.025(TRX)	16K0F1D	16 kHz	12.5 W

●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-45호

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

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(기간연장)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(변경)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,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11월 30

영산강홍수통제소장

1. 제 목: 하천수의 사용허가(기간연장) 및 실시계획인가(변경)
2. 피허가자: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410, 광주광역시장
3. 목적 및 개요: 환경개선, 서창펌프장(제2016-05호)
4. 취수위치: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동 701 일원(영산강수계 분류(국가))
5. 사 업 명: 서창천 고향의강 조성공사
6. 허 가 량: 7,500 m³/일(점용 113.2 m³)
7. 사업기간: 2016.01.01. ~ 2021.06.30.

공 고

●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-519호

유전자변형식품 승인

「식품위생법」 제18조 및 「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(식약처 고시 제2018-6호)」에 따라 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옥수수 MON87427×MON87419×NK603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,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1월 30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

1. 승인 품목

대상품목	신청자	개발자	승인번호	승인일
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옥수수 MON87427×MON87419×NK603	몬산토코리아(유)	Bayer CropScience LP	제2020-14호	2020. 11. 24.

2. 승인 조건

-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.

●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 제2020-39호

「(개인정보보호위원회)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1월 30일

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

(개인정보보호위원회)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
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인증심사 시 유사·중복점검 해소, 심사품질 향상 등 ISMS-P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ISMS-P 인증제도와 유사·중복 점검제도의 부담 해소(안 제20조)

○ (심사 생략) 수탁사가 ISMS-P 인증을 획득한 경우, 위탁사에서의 ISMS-P 인증심사에 부수되는 수탁사의 현장점검 면제

○ (상호 인정) 대학이 교육부 정보보호 수준진단에서 80점 이상 획득 시 ISMS 인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

나. 심사 품질 향상

○ (인증·심사기관 관리) 심사기관 상시 지정, 현장실사 등 사후관리 강화, 지정 취소·정지 사실 공고 기준 신설(안 제6조, 제8조, 제11조)

○ (분야별 세부점검항목) 가상자산, 의료, 공공 등 분야별 특성·신기술을 고려한 세부점검항목 마련(안 제23조)

다. 인증 인센티브 확대

○ 「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정보보호공시기업의 ISMS-P 인증수수료 할인(30%) 적용(안 제21조)

라. 코로나19 등 재난·재해 상황 발생 시 예외 조항 신설

○ 심사원 자격 유효기간 유예(안 제15조), 인증 의무대상자 이행 기한 연장(안 제19조), 유사 시 비대면 원격 심사 병행(안 제25조)

마. 기타 개정 사항

○ 심사원이 인증위원회 소속된 경우 자격 유지 의무 유예(안 제15조)

○ 심사원 지급수수료 기준 및 출장경비 지급 기준을 인터넷진흥원에서 정하여 공고하도록 개정(안 별표 6)

○ 관계법 개정 사항 반영(안 제21조), 문구 및 용어 수정(안 제2조, 제20조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(참조: 자율보호정책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기)